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4.

발 의 자 : 이종배 · 김소희 · 안철수
안상훈 · 김은혜 · 이종욱
권영진 · 진종오 · 김승수
배준영 · 조지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부상자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, 이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훈련으로 부상을 당하여 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, 동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가 까다로운 실정임.

또한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치료시설이 없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,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이라는 이유로 가명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한이 지난 의료기록 폐기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마땅하지 않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.

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유공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에 내용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유공자 심사 및 결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, 특수임무사망자·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과 그 유족 등으로 보고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4항 및 제9조의2 신설).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사실로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 예우)

- 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.
- ②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 예우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등록 및 결정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등록 및 결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사실로 특수임무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u></p> <p><u>제9조의2(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특수임무부상자 예우) 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.</u></p> <p><u>② 특수임무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「국가유공자</u></p>

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.